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 진행시점을 민사소송 제기 시로 규정〉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4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7. 17.
3. 회 부 일: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第230條(告訴期間) ① (생략) <u><신설></u>	第230條(告訴期間) ① (현행과 같음) <u>② 형법 제328조제2항의 경우의 고소는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u>

2. 검토의견

현행 「형법」 제328조제2항¹⁾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²⁾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1)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고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사인의 의사에 맡겨두는 대신 친고죄 범죄자가 장기간 불확정한 법률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³⁾

위에서 언급한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친족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도 보호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사인의 의사에 맡김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자의 법적 지위가 더욱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권리행사방해죄와 다른 친고죄간 고소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적용중지

3) 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행정사법학회, 2017. 11., p.376

헌법불합치 결정⁴⁾을 내림에 따라 「형법」 제328조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해당 개정논의의 결과까지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형법」 제328조에 대한 개정안 목록 >

의안번호	건명	주요내용
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친고죄, 그 이외의 친족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안)	친족이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규정
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규정
1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의원안)	친족이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규정
1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친고죄, 그 이외의 친족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안)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규정 전체 삭제
23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친고죄, 그 이외의 친족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되, 피해자의 심신장애 이용 시 적용배제
2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안)	친족이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36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	친족이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되, 심신장애 이용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배제
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이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친고죄로 규정

문 의 처

02)6788-5063

4)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